

이 자료는 2018년 7월 19일(목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--

# 성실신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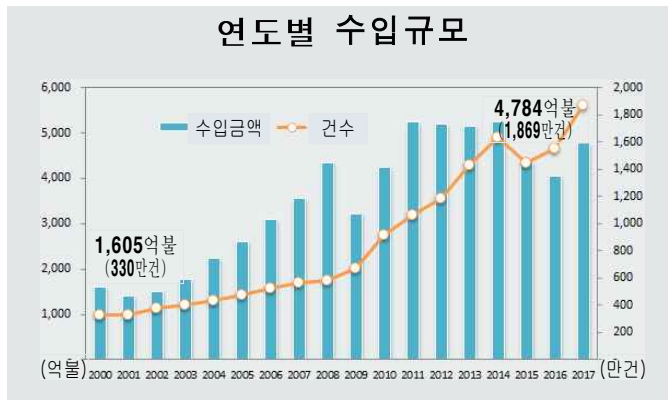
2018. 7.

관 세 청

# 순서

I. 추진 배경 .....	1
II. 신고정확도 제고를 위한 그간의 노력 .....	2
III. 추진 방향 .....	4
IV. 중점 추진과제 .....	5
1. 납세자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정보 제공 .....	5
2. 과세요건 사전심사 제도 확대 및 기준 명확화 .....	11
3. 협력에 기반한 자발적 범규준수 지원 .....	13
4. 심사행정 운영방식 개선 .....	16

- [現 납세체계] 신고납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특성상 납세자의 신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
  - 무역의 양적 증대에 비해 세관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세관이 수입단계부터 신고 정확도를 직접 통제하기에는 어려움
    - \* 우리나라 무역규모: 세계 8위 수준(WTO Report)
  - 또한, 다양한 新제품 등장, 거래구조 복잡화 등으로 인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납세신고 정확성을 제고하는데 한계



- [패러다임의 변화] 民-官 협업의 시대에 맞게 납세자와 협력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세행정이 변화될 필요
  - 관세행정의 일하는 방식을 그간의 관세조사와 같은 강제적 수단을 통해 적법성을 확보하거나 관세청-기업이 '각자 알아서 하는 개념'에서
  - '관세청은 기업에 잘 알려주고, 기업은 성실신고를 통해 범규 준수를 제고하는 방식'으로 전환 요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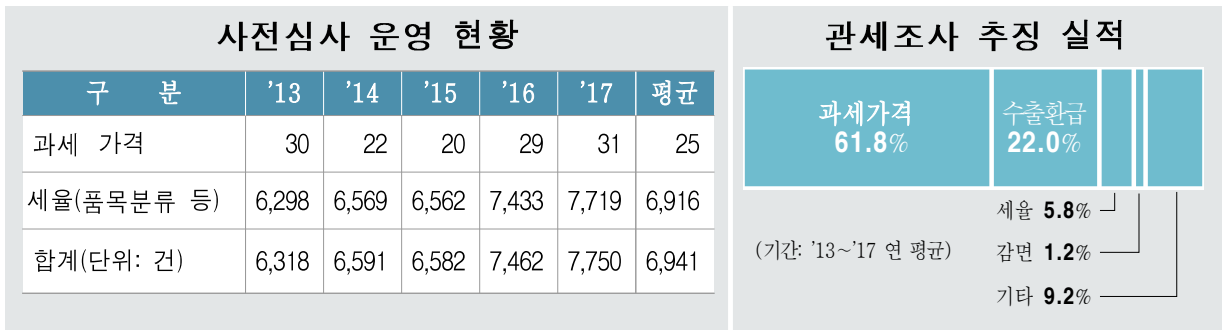
점차 복잡해지는 무역환경에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관세청의 중요한 역할

1. 통관전 신고점검 제도 운영

□ [사전심사]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수입신고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을 관세청장이 先결정·안내해주는 Advance Ruling\* 제도 운영

\* 現 3개 분야 운영: ①과세가격(관세법§37) ②품목분류(§86) ③원산지결정(FTA특례법§31)

○ 과세요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해 연간 약 7천여건의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품목분류 분야가 대부분(전체의 99.6%)을 차지



○ 관세조사에 의한 추징이 과세가격 및 수출환급 부적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동 분야에 대한 사전컨설팅이 미흡

□ [사전세액심사] 일반 통관절차\*와 달리 탈루 高위험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신고 시점에서 미리 신고의 정확성을 점검(관세법 §38②)

\* (先통관 後심사) ①통관시 수입요건만 점검 ②신고세액의 정확성은 수입신고 수리후에 확인

○ 통관단계 세액심사가 물류 지체요인으로 작용되는 점을 감안해 가격변동·세율차가 큰 품목\*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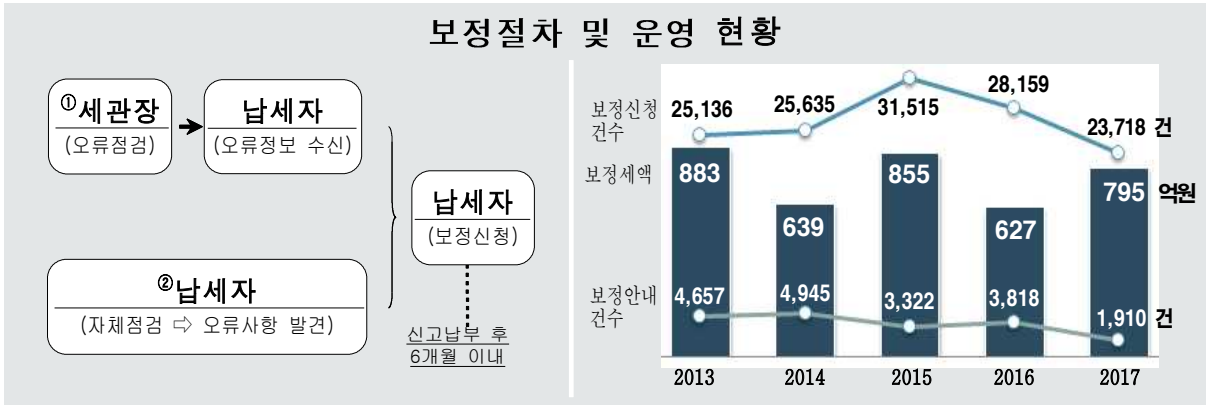
\* 참깨 등 농수산물(27개 품목), 다이아몬드 등 개별소비세 부과 품목(9개 품목)

사전세액 심사 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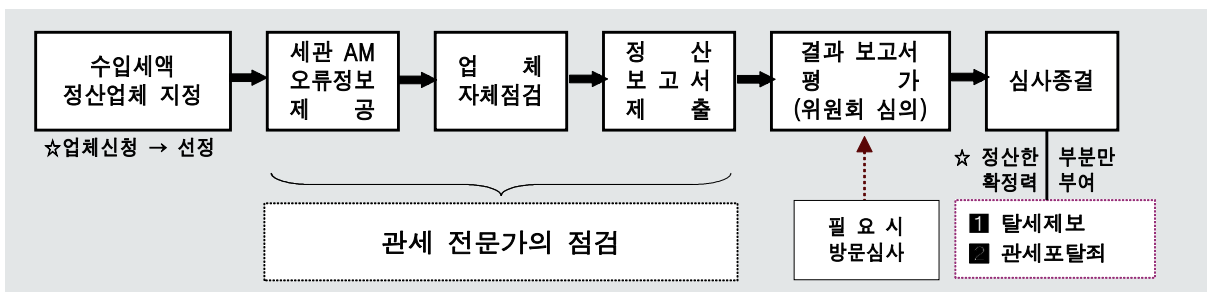
구 분	'13	'14	'15	'16	'17	평균
선별실적(건)	22,446	20,219	24,753	20,828	21,099	21,869
세액변경 금액(억원)	211.0	57.8	67.0	67.7	17.6	84.2

## 2. 통관후 신고점검 프로그램 운영

- [보정제도]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의 오류를 가산세 부담없이 조정할 수 있도록 미국의 정산제도를 벤치마킹(관세법 §38의2)하여 도입('04)
  - ①세관장으로부터 안내받거나 ②납세자가 스스로 인지한 신고오류 사항을 신고납부후 6개월 이내에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치유하는 제도



- 세관장의 보정안내 뿐만 아니라 보정신청 건수도 전반적 감소세
- [수입세액 정산제도] 성실기업(AEO)\*이 자신의 수입신고 세액을 정기적으로 자율점검·정산\*\*하는 납세협력 프로그램 도입('17)
  - \*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(Authorized Economic Operator):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 업체로서 이들 기업에는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이 제공
  - \*\* 미국의 수입자자율심사제, 독일의 적시조사제,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장점을 벤치마킹
- 일시 대구모 추징에 따른 기업의 稅-Risk를 조기 해결\*하여 납세자의 수용성도 높이면서 성실신고를 유도
  - \* (과거) 세관이 강제적으로 5년분 일괄 추징 → (신설) 기업이 1년 단위로 세액정산



- '17년도 10개사를 선정·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약 2천억원의 세액을 점검

목 표

기업의 자발적 성실신고 중심의 관세행정

운 영  
방 향

기업의 참여와 협력

소 통

납세자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정보 제공

- ① 산업별·품목별 오류 사례, 체크리스트 제공
- ② 기업별 납세오류 가능정보 제공
- ③ 특화 본부세관 운영을 통한 기업설명회 개최
- ④ 성실신고 가이드 북의 활용·접근성 제고

참 여

과세요건 사전심사 제도 확대 및 기준 명확화

- 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환급소요량 사전심사 시행
- ⑥ 과세가격 사전심사 활용도 제고
- ⑦ 품목분류 사전심사 활용도 제고 및 기준 명확화

협 력

협력에 기반한 자발적 법규준수 지원

- ⑧ AEO, 수입세액정산제 등 납세협력 프로그램 확산
- ⑨ 기업별 법규준수도 측정 고도화 및 안내 강화
- ⑩ 가산세 부담없는 보정제도 활성화

추진기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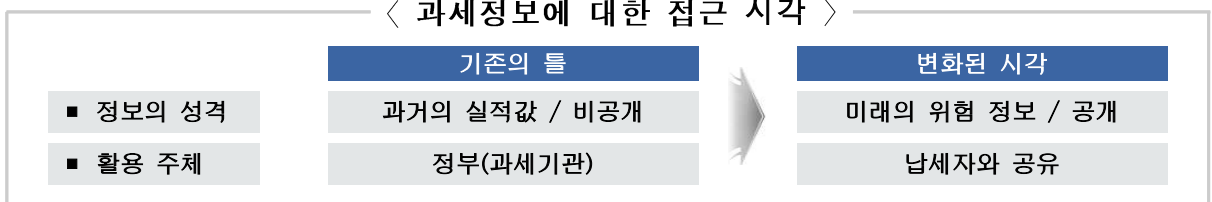
심사행정 운영방식 개선

- ▶ 성실신고 지원 전담조직 운영
- ▶ 성과평가 지표 개편

## 1 납세자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정보 제공

## ① 산업별·품목별 오류 사례, 체크리스트 제공

- [방 향]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성실 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전체적인 관세조사 규모는 축소



- [맞춤형 정보] 수출입신고 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납세자 유형별로 맞춤형 신고안내 체계를 구축하여 활용성 극대화
  - 그간에는 제도·법령의 변경 사항 안내에 중점을 두었으나
  - 납세자들이 효과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별로 ①관세 조사(최근 5년간) 등에서 적발된 신고오류 유형, ②유권해석·행정 심판·법원결정\* 사례 등을 DB化하여 활용

\* 불복진행 과정 전반의 진행사항을 연계하여 구축(적부심사 ⇨ 행정심판 ⇨ 행정소송 전과정)

- [제공 방식]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고 도움정보를 365일 언제든지 쉽게 찾아보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법령포털에 등재·개방

- 최신 관세정보를 적기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뉴스레터 형식으로 이메일링 서비스 병행
- 협회·단체에 공문 발송 및 협회지에 게재



- [Self-Check] 기업 스스로 위험요소를 분석·검증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제공

## ② 기업별 납세오류 가능정보 제공

- [방 향] 납세오류 가능 정보를 기업·개인에 공개·공유함으로써 관세조사 사각지대를 포함한 수입기업 전반의 성실납세를 유도·지원
- [맞춤형 지원] 수출입신고 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납세자가 실수없이 신고하도록 납세자별로 맞춤형 신고 도움정보 제공
  - 과세표준 누락(로얄티 등), 품목분류 오류, 동일 업종내 매입원가·환급률 비교 등 기업별 맞춤 도움 정보(시각화) 제공\*
- \* 1개 기업이 수입하는 물량을 다수의 지역별(공항만 등) 관세사가 신고 대리하는 관세행정 특성을 고려하여 UNI-PASS를 통해 납세자에게 직접 제공(다만, 위임받은 관세사에게도 제공 가능)

- 장기적으로 우리청에서 위험관리 목적으로 관리하는 기업별 프로파일 정보\*를 기반으로 기업에 제공하는 정보도 점진적으로 확대

\* 주요적발이력, 해외공급자별 과세가격, 품목별 평균단가, 품목별 적용세율 실적 등

- [서비스 방식] 납세지원정보 제공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시행 초기 기업의 부담 등 부작용 최소화에 중점

- 1단계 (설계·개발) ('18년 上) 제공 콘텐츠 개발 (대내외 의견수렴 포함)
- 2단계 (시범 운영) ('18년 下) 테스트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메일링 서비스 및 검증
- 3단계 (제도 시행) ('19년 上)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UNI-PASS를 통해 상시 제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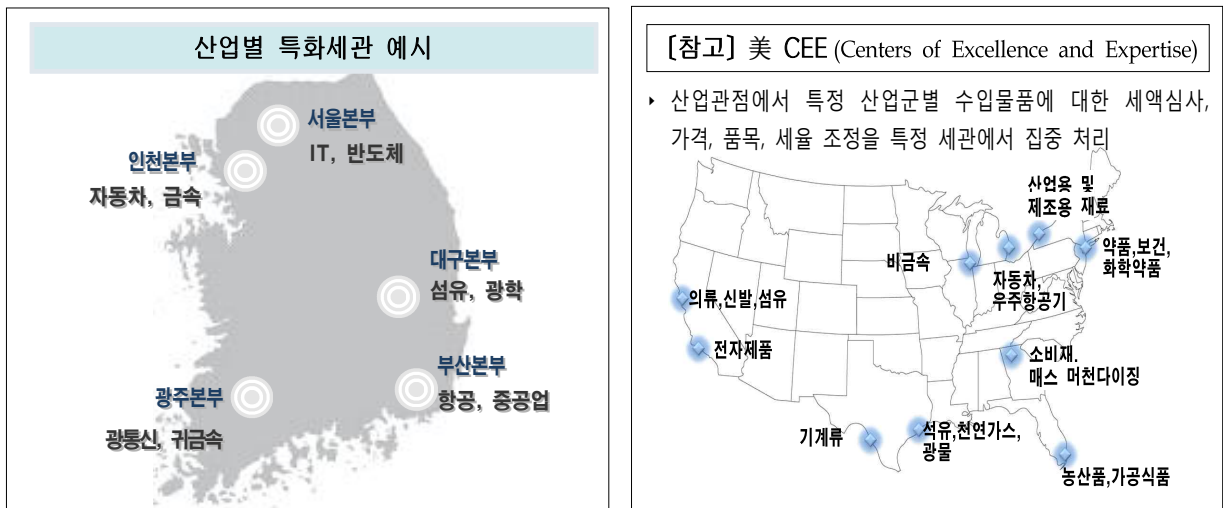
### ③ 특화 본부세관 운영을 통한 기업설명회 개최

- [방 향] 기업이 성실신고 안내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CEO부터\*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확립

\* CEO(최고 경영자, Chief Executive Officer), CFO(최고 재무관리자, Chief Financial Officer)  
 ⇨ 통관·물류 부서 + 제품 생산·개발 + 재무부서

- [특화 본부세관 운영] 기업과 현장 접점에 위치한 각 본부세관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특성화 세관\*으로 지정하여 산업별 거점 안내 창구 역할 수행

\* (예시) 서울본부 ⇨ 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 / 대구본부 ⇨ 섬유, 안경 및 광학 산업 등



- [특성화 안내] 본부세관을 중심으로 특정 업종·산업별 협회\* 등과 연계하여 회원사 대상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 실시

\* 한국섬유산업연합회, 한국자동차산업협회, 한국석유화학협회,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

- 산업별 최근 5년간 관세조사 등에 따른 주요 신고오류 적발, 품목 분류 사례 등 안내(필요시 '본청 - 관세평가분류원'에서 강사인력 지원)

- [외투기업 안내] 본청 및 관세평가분류원을 중심으로 주한 상공 회의소\*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기 설명회도 병행

\* Amchamkorea(미국), ECCK(유럽), Seoul Japan Club(일본) 등

- [협회지 등 기고] 법령개정 사항 및 신고오류 사례를 산업별 협회지를 통한 정기적·맞춤형으로 기고하여 CEO의 관심·체감도 제고

# 참 고

## 주요 산업별 협회 현황 및 세관별 배정(안)

본부세관	담당부서	산업 분야	관련 단체
인천	심사총괄과 성실신고지원팀  032-452-3364	금속 · 부품 · 소재	한국철강협회
			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
			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
			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
			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
			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
		자동차	한국자동차산업협회
			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
		의료기기	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
			대한치과기재산업협회
		주류 · 담배 · 식품 등	한국주류수입협회
			한국담배협회
		석유 · 가스 · 석탄 · 화학 등	한국석유화학협회
			대한석탄협회
		서울	심사총괄과 성실신고지원팀  02-510-1320
한국반도체산업협회			
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			
한국전자회로산업협회			
한국정보산업연합회			
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			
한국과학기술기공업협동조합			
한국로봇산업협회			
전기 · 기계	한국전기산업진흥회		
	한국전기안전협회		
	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		
	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		
	한국기계산업진흥회		
	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		
	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		
	대한건설기계협회		

본부세관	담당부서	산업 분야	관련 단체
		생활용품	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
			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
			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
			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
			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
부산	심사3관실 성실신고지원팀 051-620-6913	항공·중공업·방위	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
			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
			한국플랜트산업협회
			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
			한국철도차량산업협회
			한국방위산업진흥회
		의약품	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
			한국제약바이오협회
		신발류	한국신발산업협회
		대구	납세심사과 성실신고지원팀 053-230-5359
한국부직포공업협동조합			
한국섬유기계협회			
수지·세라믹	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		
	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		
	한국세라믹총협회		
광학	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		
광주	납세심사과 성실신고지원팀 062-975-8182	광통신·에너지	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
			한국광전자산업전문인협회
			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
			한국전지산업협회
		귀금속	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
			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

#### ④ 성실신고 가이드 북의 활용 · 접근성 제고

- [방 향] 불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원칙, 수출입신고 절차의 안내 중심에서 탈피해 위험관리 매뉴얼로 활용가능토록 재구성
- [다양화] 업종 · 산업별\*, 외국인 투자기업 및 해외직접구매자 등 납세자 유형별로 활용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성실신고 안내 가이드의 구성을 차별화하여 제작
  - \* 전자 · 전기, 금속 · 철강, 섬유세라믹, 기계로봇, 자동차 · 항공, 조선 · 해양플랜트, 석유 · 화학, 섬유 · 의류, 바이오, 농수축산, 식품 등
- 신고방법, 자료보관 · 제출방법 이외에도 납세자 입장에 맞추어 해당 업종 등의 ① 신고오류 정보 ② 과세가격 · 품목분류 동향 등도 함께 수록

〈 예시: 맞춤형 성실신고 가이드 〉

<p>현행 (국문)</p>	<p>영문</p>	<p>해외직구 분야</p>
<p>반도체 분야</p>	<p>평판디스플레이 분야</p>	<p>업종별 적발 사례</p>

- [접근경로 확대] 필요시 일반 서점 등에서도 구매하거나 모바일로도 수시로 열람 · 활용할 수 있도록 e-Book 형태 서비스 제공 추진

## 2

# 과세요건 사전심사 제도 확대 및 기준 명확화

## 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환급소요량 사전심사 시행

- [방 향] 수출기업이 자율소요량 산정 오류\*로 인한 사후 추징위험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

\* 관세조사 추징 중 수출환급 분야 비중: 22.0%

연도별 추징 실적: 2,111억원('13) → 1,849억원('14) → 131억원('15) → 555억원('16) → 108억원('17)

- [영역 확대] 중소기업 대상 '소요량 사전심사 제도' 시행 등 사전심사·판정 영역을 확대

- 환급액 산정의 기초인 소요량에 대하여도 세관장이 사전에 확인



- [심사방식 개편] 환급소요량 심사를 추징 중심에서

정확한 환급 및 숨은 환급금 발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

- 생산물품에 최적화된 소요량산정방법(loss량 산정 등)을 안내하고, 환급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환급받지 못한 환급내역을 적극 발굴·안내

## ② 과세가격 사전심사 활용도 제고

- [방 향] 과세가격을 수입신고 전에 미리 결정하는 과세가격\*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 하여 조세분쟁 위험 완화

\* 관세조사 추징 중 과세가격 쟁점이 차지하는 비중: 61.8%

- [ACVA]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특수관계\* 거래 기업의 ACVA\*\* 진입 장벽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전반적인 신고정확도 제고

\* 총 수입액 중 35.4%(1,631억불) / 납부세액 중 43.6%(24.5조원) 차지(최근 5년 평균)

\*\*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(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)

- 사전심사의 심사기간 단축(1.5년→1년), 유효기간 확대(3년→5년) 및 관세조사 유예 혜택 제공으로 성실납세 협력 프로그램 활용 촉진 추진

- [대상 확대]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납세자 사전심사 신청권의 범위를 과세가격 결정방법 전반의 의문사항까지로 확대

기 존	개 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사전심사 대상 차등 적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: ①가산요소, ②공제요소, ③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한정</li> <li>- 특수관계자간 거래 거래물품 : 과세가격 결정방법 전반의 의문사항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사전심사 대상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거래 당사자간 관계의 특수성 구분없이 과세가격 결정방법 전반의 의문에 대해 사전심사 신청 허용 &lt;관세법 §37① 개정 추진&gt;</li> </ul> </li> </ul>

### ③ 품목분류 사전심사 활용도 제고 및 기준 명확화

- [방 향] 新상품의 등장 등으로 관심이 지속적 확대\*되는 반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품목분류 분야에 대한 신고지원 확대

\* 사전심사 신청건수: 6,891('13) → 7,520('14) → 7,765('15) → 8,966('16) → 8,350('17)

- [사전심사 개편] 既 수입된 물품의 경우에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납세자 지원

- 납세자 지원을 위한 제도 취지를 살려 이미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

- [우리나라 HS해설서 마련] 新기술·多기능 접목 복합상품 등 이슈

품목의 분류기준 등을 정리하여 자체 HS 해설서\*를 마련하고 공개함으로써 미리 알려주는 행정 확산

예시: 항공촬영 드론



카메라 (세율 8%)

헬리콥터 (세율 0%)

\* 미국, EU는 WCO HS해설서와 별개로 자체 HS해설서 마련·운영 중

- 한편 국민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휴대품, 新제품,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를 웹툰 형식으로 제작하고
- 품목분류 관련 주요 이슈·결정사례 및 WCO 국제 동향 등을 작성·배포하여 품목분류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제고

### 3

## 협력에 기반한 자발적 법규준수 지원

### 1 AEO, 수입세액정산제 등 납세협력 프로그램 확산

- [방 향] 강제적 성격의 ‘조사(Investigation)’ 보다는 미리 알려주고 이를 ‘검증·감사(Audit)’하는 방식으로 기업과 세관간 협업을 통해 과세문제를 해결하는 체계 확립
- [AEO 활용 확대] AEO기업 등 납세협력 의지가 높은 기업을 발굴·확대하고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
  - 기업들의 AEO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\*을 낮추고\*\* AEO의 신고협력과 연계하여 혜택의 체감도 제고
    - \* ①법규준수 ②재무건전성 ③내부통제 ④안전관리 → 4대분야 62개 항목
    - \*\* WCO 국제표준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의 AEO 공인기준 및 심사절차 간소화 등
  - AEO기업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법규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토록 하고 세관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
  - AEO기업이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 항목을 필수점검 항목 위주로 대폭 축소\*하여 기업의 AEO 공인 유지부담도 완화
    - \* (現) 공인기준 전체(70여개) 평가 ⇨ (변경) 필수위주(30여개) 평가
- [수입세액 정산제 정착] 시범운영 기업 이외, 정산제 도입의지가 높은 기업을 추가로 확대 지정

- 관세청 내 최고 전문가를 참여기업에 대한 상담전문관(Account Manager)으로 배치하여 과세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



수입세액 정산제의 지향점	
기업측면	① 과세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② 기업이 관세신고 절차에 적극 참여함에 따라 정확한 신고에 대한 관심 제고
세관측면	충분한 과세자료와 시간을 두고 검증을 하여 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

※ 장기적으로 총 수입액의 75.4%를 차지('17)하는 상위 1,000대 기업까지 납세협력 프로그램에 흡수

## 2 기업별 법규준수도 측정 고도화 및 안내 강화

- [방 향] 기업이 스스로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공개 등 법규준수도 정보제공 범위 확대
- [고도화] 신고정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기업별 ‘법규준수도’의 평가체계를 現 실정에 맞게 재설계하고 평가 기준·항목도 공개
  - 관세행정 환경변화, 분야별 위험 동향 등을 반영 재설계 추진

중요 사항	결제금액, 수량, 단가, HS부호, 세율	차 등	경미 사항	수입자, 거래구분, 거래품명, 모델·규격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- 현행 훈령형식으로 운영중인 법규준수도 측정·평가체계를 전면 고시로 제정하여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도 제고
- [안내 확대] 기업의 성실도 수준 및 법규준수도 측정값 증감요인, 주요 감점 사례까지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여 업계 전반의 법규준수도 향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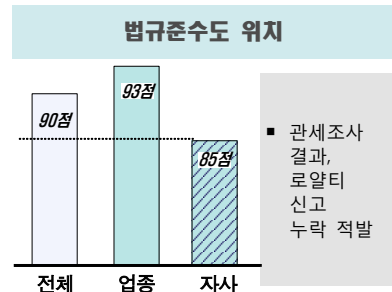
- 법규준수도의 감점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\*하여 오류사항에 대한 기업의 자체점검 유도

수입 > 중요정정 감점 상세내역

일련 번호	신고번호(번)	발행일자	발행사유	정정종류	정정내역	정정후내역	정정차수
1	407601712135 6M(00)	2017/12/28	기타	물재통치코드	USD		1
2	407601712135 6M(001)	2017/12/28	기타	부가세과세과목 금액	13024718	12432735	1
2	407601712135 6M(001)	2017/12/28	기타	신고단가	720	77760	1
2	407601712135 6M(001)	2017/12/28	기타	신고금액	11825.28	1277130.24	1
3	425301760346 0M(00)	2017/12/27	수입신고료 (A)오류 수정 - 단위오류, 품 명정정, 금액 변조(오류 등)	윤일	1102384	1150855	1
4	425301760346 0M(001)	2017/12/27	수입신고료 (A)오류 수정 - 단위오류, 품 명정정, 금액 변조(오류 등)	부가세과세과목 금액	158522008	158575041	1
5	425301760344 7M(001)	2017/12/26	수입신고료 (A)오류 수정 - 단위오류, 품 명정정, 금액	신고품명	3923.30-0000	BOOKS, CASES, CRATES AND S INGLAR ARTICL	1

\* (現) AEO공인기업 → (향후) AEO공인기업 + 非 AEO기업 중 법규준수도 80점 이상 기업

- 관세행정 전문성이 낮은 중소기업 등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UNI-PASS에 수출입 공급망별\* 주요 감점사례를 상시 안내



\* 수출입업체, 관세사, 보세구역 운영인, 보세운송인, 화물 운송주선업자, 선사·항공사 등

- 수출입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교육\* 실시

\* (사)한국AEO진흥협회의 기업대상 교육에 ‘법규준수도 평가기준 및 감점사례’ 강의 신설



### ③ 가산세 부담없는 보정제도 활성화

○ [방 향] 기존 추정 중심의 보정심사에서 세액오류 가능성을 검토하여 납세자에게 미리 안내함으로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본연의 제도 취지로 복원

- 그간 탈루세금 과세강화 목표값 달성을 위해 사전 보정안내보다 심사 추정액 달성에 치중

구 분	'13	'14	'15	'16	'17
안 내(건)	4,657	4,945	3,322	3,818	1,910
안내율(%)	60.8	60.8	41.7	48.6	28.3

○ [보정안내 확대] 보정안내 대상 선별기준을 고도화하여 보정안내 효과성 제고

- 장기적으로는 본청 전산에서 선별한 건은 전산시스템에서 즉시 납세자와 세관별 보정담당자에게 동시에 안내·전송하여
- 납세자가 오류 가능정보를 접근·치유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세관은 현장특성에 맞는 안내대상 발굴에 집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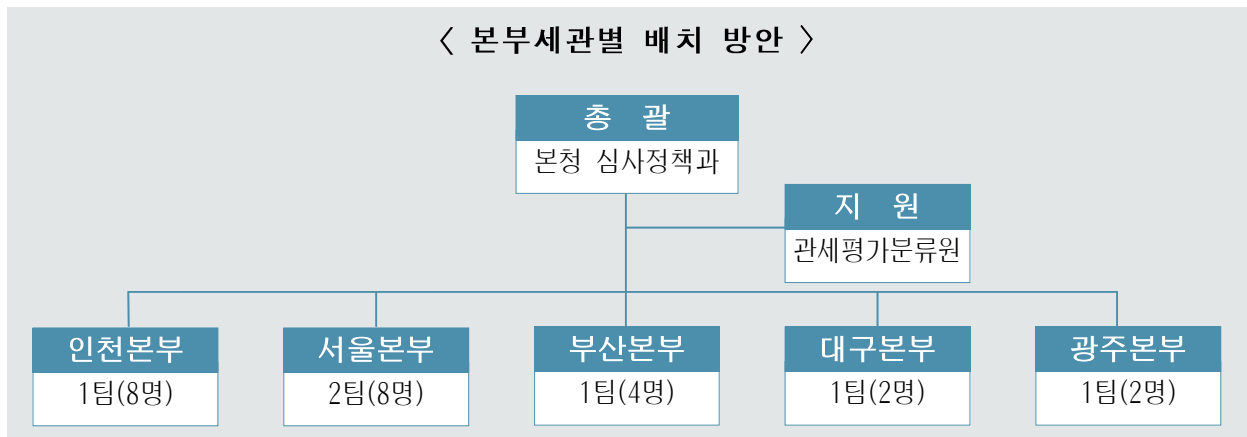
○ [인력 운용] 보정안내에 집중할 수 있도록 他업무와의 겸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, 관세조사 부서와 인적 교류를 통해 전문성 함양

- 장기적으로 보정안내 인력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인력재배치 추진

## 4 심사행정 운영방식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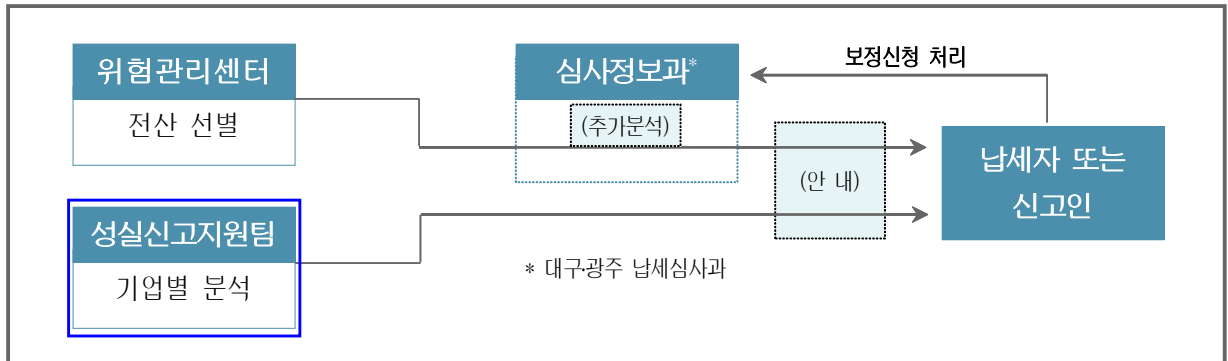
### 1 본부세관별 성실신고 지원 전담조직 운영

- [배치방안] 전국 5개 본부세관에 6팀 28명으로 성실신고 지원 전담 조직·인력 구축('18 상반기)
- 전체적인 관세조사(정기·수시) 규모를 축소하고 現 기업심사팀 중 일부를 성실신고 지원 조직으로 전환 배치



- [임무] 납세협력 프로그램인 ACVA·정산제 활동은 지속 하되, 기존 관세조사 업무를 성실신고 지원업무로 대체
- (HeadQuarter) 본부세관내 성실신고 지원업무를 총괄
  - 세관별의 특성에 맞는 「성실신고 지원 기본계획」을 수립
  - 성실신고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세관내 통합창구 역할 수행 및 산하세관 지휘
- (산업별 지원) 세관별 특화된 산업에 대하여 오류 정보 수집 ⇨ 산업별 오류 사례집 등 작성·발간 ⇨ 산업별 설명회·안내 주관 / 협회지 등에 정기 기고 등

- (기업별 지원) 보정기간분 정보분석(산하세관분 포함) ⇨ 기업에 안내
- 안내사항에 대한 기업의 문의 사항 상담창구 역할도 함께 수행



## ② 성실신고 안내 중심으로 성과평가 지표 개편

- [방 향] 기존의 추정금액 중심의 성과평가 방식을 과감히 개선
- [개 편] '18년도 심사분야 주요 성과지표를 아래와 같이 개편·운영

기 존	개 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기업심사 적발(추징) 실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성실신고 지원 활동 실적</li> <li>▶ 컨설팅 방식 심사 점검률</li> <li>▶ 납세협력 프로그램 운영 건수</li> </ul>